# 경기도학생인권조례로 여는 새로운 학교의 전망

경기도교육청
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
자문위원회

# 차 례


- 학생인권의 현실과 보장 필요성
- 학생인권에 관한 국제기준과 세계적 흐름
-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기대 효과
- 경기도학생인권조례로 여는 새로운 학교의 전망
  : 인권이 꽃피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10가지 열쇠말
-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기본 원칙
-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 운영 원칙

# 1. 학생인권의 현실과 조례 제정 필요성

우리 교육은 학생들을 웃게 하나요?

EBS 지식채널e,

<대한민국에서 초딩으로 산다는 것> 중에서

# ➢ 늘어나는 청소년 자살

- 2008년 학생 137명 자살
- 2004년~2008년 학생 623명 자살, 5년새 35.6% 증가
- 성적비관 자살은 4.25배 증가

- 교육과학기술부(09년)

- 청소년 20명 중에 1명꼴로 자살 시도

- 질병관리본부 발표(07년)

- 청소년 2명 중 1명꼴 자살 생각, 10명 중 1명꼴 자살 시도

- 한국청소년상담원(08년9월)

- 청소년 사망원인 2위가 자살

- 통계청(09년)

# ➢ 청소년 자살과 교육현실의 상관관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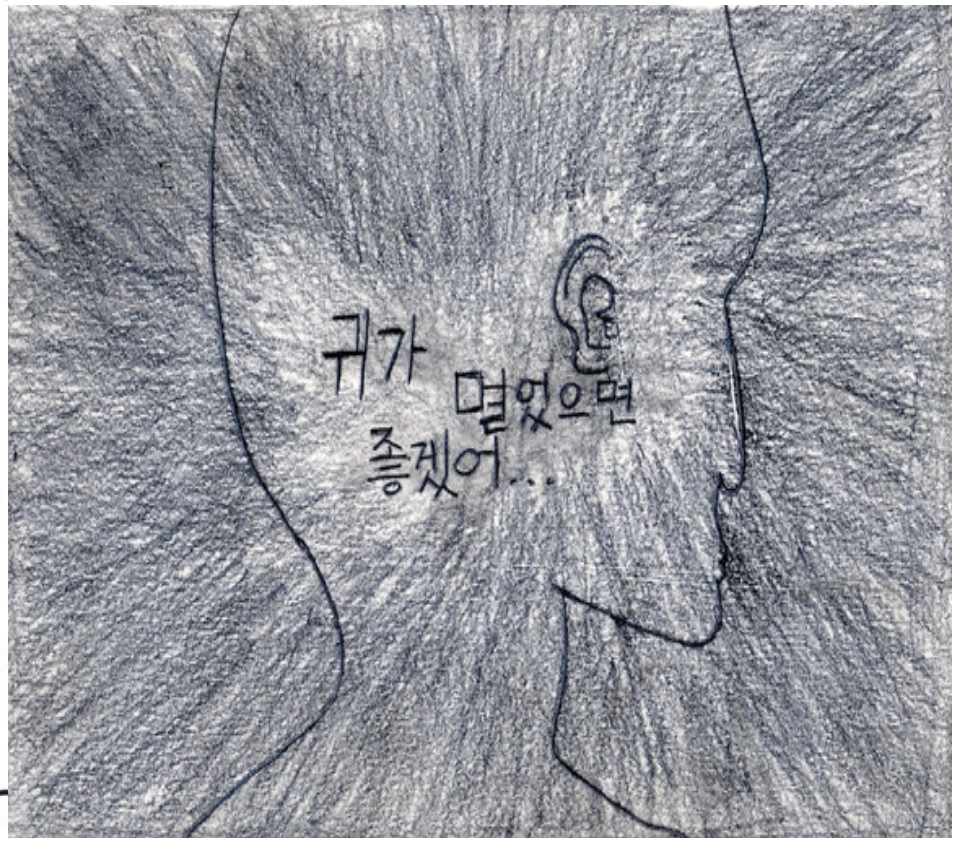


- 청소년들이 시사잡지에 보내온 비밀엽서에 담긴 말
- 우리 교육과 사회가 던지는 메시지는? 삶의 기쁨은 어디에?

## ➢ 학생인권, 이루지 못한 목표

- 경기도의 한 사립 기숙사 고등학교
- 학생들이 학교 현실을 언론과 인터넷에 알려

  ‘리얼 입시 정글고’로 널리 알려짐.
- 기숙사 한 방에서 10~50인이 생활,

  체벌, 얼차려, 소지품검사, 편지 검열까지…

2008년 2월, 참다 못한 학생들이 학교옥상에 올라 던진 종이비행기에 쓰여 있던 말

☞ **“사육이 아닌 진정한 교육을 원해요.”**

과연 한 학교만의 문제일까요? 우리 학교는 아니라고요?

☞ **한 명의 학생이 지르는 비명이라도 귀담아듣는 것이 교육!**

## ➢ 무책임한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

- 늘어나는 학생간 폭력

☞ **분출구를 찾지 못한 스트레스와 분노**

- 학생회장 선배가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 발생(08년 강릉)

☞ **유일하게 알고 있는 문제해결 방법이 폭력**

# ➢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

- 스페인 오렌세에 위치한 벤포스타(Benposta) 어린이공동체
- 어린이는 스스로의 주인, 삶의 기쁨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을 훈련하도록 만든다는 철학에 기초
-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만들어온 시민법

☞ **1조 “시민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다.”**

# ➢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

- 가혹한 경쟁과 우애교육의 실패가 가져올 잔혹한 교육, <배틀로얄>
- 학생인권은 삶의 기쁨과 책임을 일구어내는 교육의 밑거름

☞ **학생인권은 사람과 교육을 동시에 살리는 길**

## ➢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선도성

- 학생도 교사도 가고 싶은 학교, 감동이 있는 학교 만들기 서둘러야
- 교육현실을 정확하게 짚어낸 김상곤 경기교육감

☞“ **소통과 나눔 속에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 만들겠다.**”

# 2. 학생인권에 관한 기준과 세계적 흐름

우리 교육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도달하고 있나요?

# ➢ 어린이, 청소년은 미성숙한가, 미성숙해지는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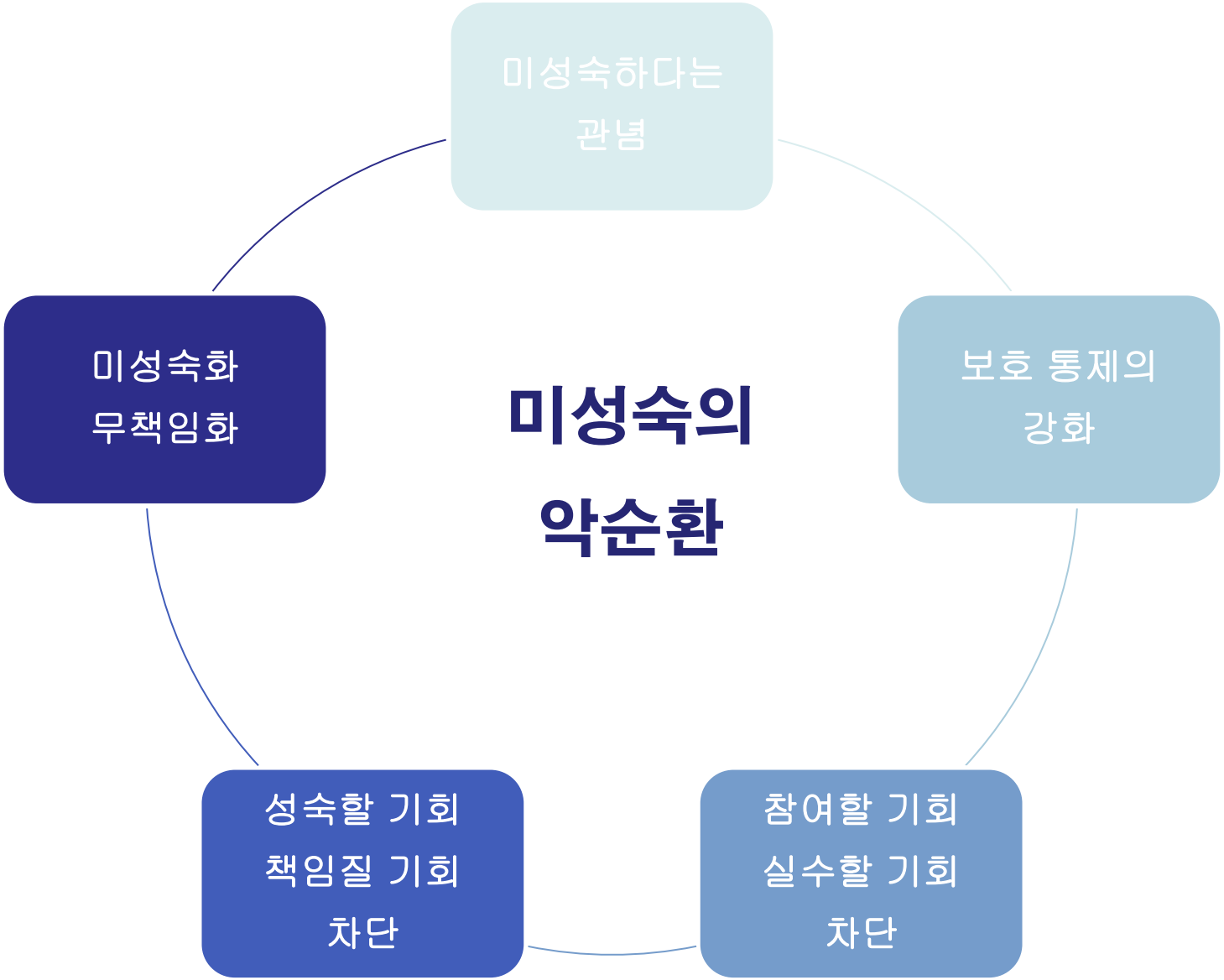

## ➢ 세계가 발견한 첫 번째 해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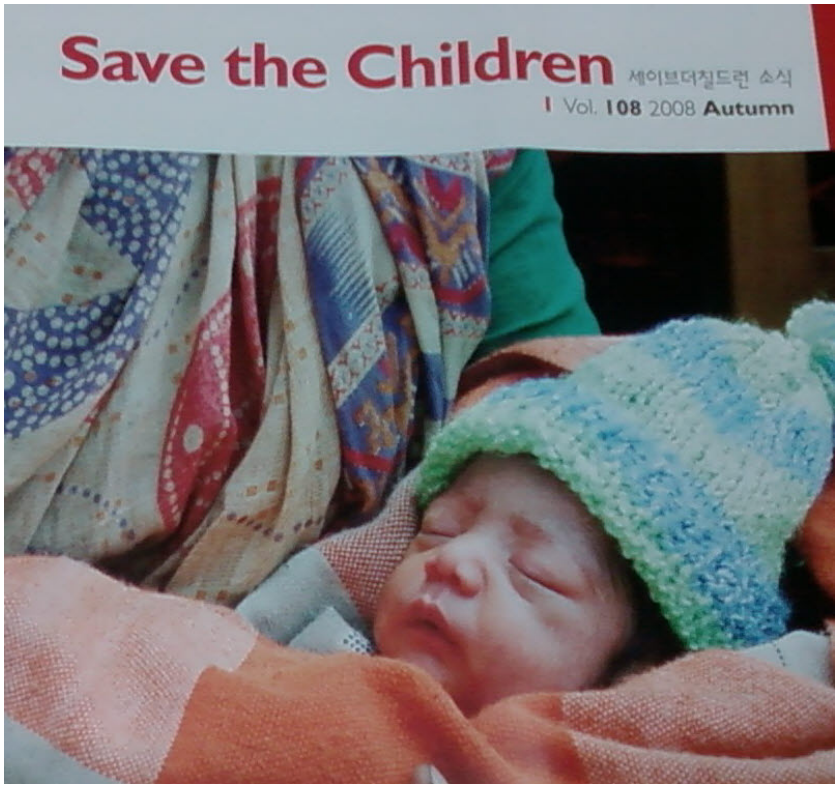

✓ 위험에 빠진 어린이, 청소년의 삶에 주목하라

✓ 어린이, 청소년에게는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다

**- 20세기 전반기의 아동인권관**

## ➢ 세계가 발견한 두 번째 해답

✓ 어린이,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

✓ 돌봄은 참여와 자기결정과 동행해야 한다

**- 20세기 후반기의 아동인권관**

## ➢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개 일반원칙(4P)

: 1989년 유엔총회 채택, 1991년 한국정부 가입 비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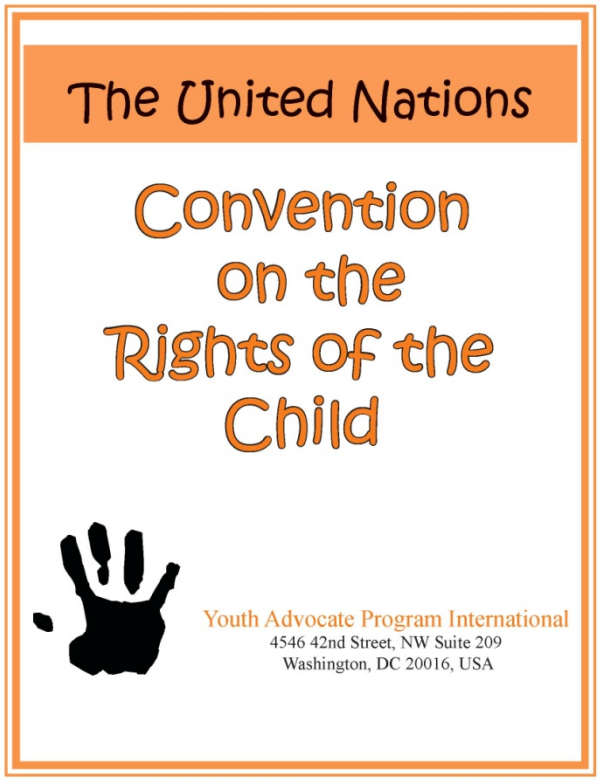


- **Protection(보호)**

  : 18세 미만 아동 누구도 차별 없이

- **Prevention(예방)**

  :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

- **Provision(제공)**

  : 생명, 생존, 발달의 권리 보장

- **Participation(참여)**

  : 아동 자신에게 영향을 모든 문제에 의견을 표할 권리

  :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

## ➢ 교육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4대 의무(4A)

: 교육권에 관해 유엔인권기구들이 제시한 기준

- **Availability(가용성)**

  : 교육기관의 설립과 이용 보장

- **Accessibility(접근성)**

  : 물리적, 경제적 장벽 허물기

  : 차별 없는 학교

- **Acceptability(수용성) 보장**

  : 교육의 질과 안전 담보

  : 감당할 만한 규율, 교육과정, 학습부담 보장

- **Adaptability(적용성)**

  : 학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, 융통성 있는 교육의 변화

## ➢ 학생인권 보장은 교육권 실현의 본질적 요소

▪ 인권으로서의 교육권

(The right to Education)

: 교육권의 주체는 사람(학습자)

**cf. The right to Schooling**

- 학교교육에 대한 권리는 교육권 실현의 한 형식
- 교육권 실현의 장소는 학교만이 아니며 교육권은 전 생애의 권리

**cf. The right to Teaching**

- 교수권은 교육권 실현을 위해 요청되는 하위의 권리

▪ 유엔아동권리협약 28조(교육권)의 2

: 당사국은 학교규율은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# ➢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지적한 부끄러운 한국교육

: 1996년, 2003년 두 차례 걸쳐 한국정부에 권고한 주요 내용

- 교육의 경쟁적인 풍토가 아동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책임있는 생활을 영위할 준비를 하는 과정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다.
- 학교생활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.
- 학교에서 체벌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.
- 학생회와 교외 정치활동을 통제하는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.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
- 교사, 판사, 사회복지사 등 아동 관련 전문가에 대한 인권교육이 부족하다.

☞ **권고 이행을 위한 법적, 정책적 변화 뒤따라야**

# 3.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기대 효과

학생 인권의 법적 기반은 충분한가요?

# ➢ ’학생인권 존중’에 관한 국내법적 근거

## ▪ 대한민국 헌법

10조 :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. (…)

31조 1항 :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.

## ▪ 교육기본법 12조(학습자)

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.

② 교육내용·교육방법·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.

## ▪ 초중등교육법 18조의4(학생의 인권 보장)

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「헌법」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.

## ➢ 선언적 법규정 한계 보완할 조례 제정 필요

- 학생인권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 심각

  ☞ **구체적 기준 마련으로 갈등 해결**

- 실효성 부족한 선언적 법률

  ☞ **구체적 수단으로 실효성 확보**

- 교사-학생, 교사-교사, 학교-학부모 사이의 불신 증폭

  ☞ **학생-교사-학부모 권리가 조화를 이룬 교육공동체 회복**

- 인권과 책임이 무시되는 사회문화

  ☞ **인권을 존중받고 자발적 책임을 훈련하는 학교문화 형성**

# ➢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 필요성

- 광주, 경남, 부산, 안성, 군포... 지역에서 일고 있는 조례 제정 움직임
-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경기교육청이 최초의 자치 입법 시도

☞ **타 지역의 모델과 선례로 기능**

# 4. 경기도학생인권조례로 여는 새로운 학교의 전망

**인권이 꽃피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**
**10가지 열쇠말은 무엇일까요?**

# ➢ 10가지 열쇠말을 통해 본, 경기도교육청이 지향하는 행복한 학교의 모습

"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학교는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입니다. 행복한 학교는 국제인권기준에 맞닿아있어야 합니다."

- 경기도학생인권조례추진대회 김상곤 교육감 인사말 중에서

-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과 조약기구들이 제시한 인권기준
-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의, 비엔나 세계인권회의, 유엔인권위원회 등의 결의안과 선언
- 유엔 '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'의 보고서
- 유니세프, '아동 친화적 학교' 지침

등을 통해 '행복한 학교의 10가지 열쇠말' 뽑아냄.

* 참고자료: <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>(2007)

# 1.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의 학생

: 모욕과 폭력이 없는 학교 - 학창시절은 인생의 대기실이 아니다.

: 교육의 목적은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증진하고 지원하며 보호하는 데 있다.

"협약은 아동의 지위를 독립된 인격체이자 인권의 주체로 단언한다. 아동은 부모나 국가의 소유가 아니며 단순히 관심의 대상이지도 않다."

-유엔아동권리위원회

일반논평 8, 47항

## 2. 참여와 결정을 훈련할 수 있는 학교

: 배제와 강요가 없는 학교 - 학생의 참여는 권리이다.

: 형식적 참여, 명목적 참여, 장식적 참여는 진정한 의미의 참여가 아니다.

"아동의 의견을 "듣는 것"처럼 보이는 것은 비교적 큰 도전이 아니며, 그들의 견해에 적정한 비중을 두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."

- 유엔아동권리위원회

일반논평 5, 12항

# 3.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

: 차별과 획일이 없는 학교 – 학교는 학생의 다양성을 사랑해야 한다.

: 모든 학생은 차이를 존중받는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다.

"다양성은 교육의 초석이다. (...) 성장이란 민주화와 반차별이 존엄한 삶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경험해야 하는 집단적 학습 과정이다."

- 유엔 교육권 특별보고관 보고서

E/CN.4/2005/50, 70-71항

# 4. 감당할 만한 교육

: 배움이 즐거운 학교 – 학생은 학습할 능력을 타고났지만 잘못된 교육에 의해 학습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.

: 학생이 육체적, 정신적, 경제적, 문화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교육은 '교육'의 궤도를 이탈한 것이다.

"모든 아동은 비폭력의 상황에서 학습해야 하고, 학교는 안전하고 아동 친화적이어야 하며, 교과과정은 권리를 기반하여 이뤄져야 한다."

- <아동폭력에 대한 유엔연구> A/61/299, 111항

# 5. 자유의 행사를 통한 책임 있는 삶의 영위

: 자유를 통해 책임을 배우는 학교 – 학생은 인격과 자유를 존중 받을 때 타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정당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.

"교실과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것을 격려하고 허용해야 하며, 스스로 생각할 자유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할 자유를 이해하는 장이다. 교육에 대한 권리는 이러한 자유의 행사를 포함한다."

- 유엔 교육권 특별보고관 보고서

E/CN.4/2005/50, 115-7항

# 6. 학생의 삶에 대한 총체적 돌봄이 있는 학교

: 학습뿐 아니라 삶을 돌보는 학교 – 학교는 학생의 삶에서 중요한 인격적, 사회적 환경이다.

: 학생의 삶을 총체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학생이 학교에 들어오기 이전 상황과 학교를 떠난 이후 '가정, 지역사회, 일터'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유념하는 것이다.

"학교는 의료서비스, 상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청소년에게 제공하기 위한 자원이자 위탁센터로서 복무해야 한다. 특히 학대, 방임, 피해 및 착취로 고통받고 특별한 필요를 가진 청소년에게 그렇다."

- 청소년 비행 방지를 위한 유엔가이드라인 26항

# 7.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에 대한 존중

: 자유와 보살핌이 함께 보장되는 학교 – 학생의 모든 권리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.

: 물적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자유의 행사도 가능해진다. 또한, 보살핌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학생의 의견과 자유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.

"청소년 건강권의 실현은 비밀유지와 사생활을 존중하고 적절한 성 및 생식 관련 건강서비스를 포함하는, 청소년 친화적인 보건의료의 발전에 달려있다."

- 유엔사회권위원회

일반논평 14, 23항

# 8. 네트워크와 연대가 꽃피는 학교

: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'마을' 하나가 필요하다.

: 학생 권리의 이행에는 학생 자신을 포함한 사회의 전 부문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. 학교는 폐쇄공간이 아니라, '마을'에 열려 있어야 한다.

"아동의 인권 보장, 보호 및 감독을 위한 비정부기구와의 제휴와 연대의 발전을 환영하며 정부가 그들에게 비지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비정부기구와의 긍정적인 공식적·비공식적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촉구한다."

- 유엔아동권리위원회

일반논평 5, 59항

# 9. 교사의 권한과 역량 강화

: 학생인권 문제를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. 학생인권 보장은 시스템을 갖춘 학교를 요구한다.

: 교사는 능동적 참여를 보장받고 학생인권을 지지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.

"교사는 인권에 기반한 학교 시스템을 갖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자이다. (...)어떤 교육 개혁도 교사의 능동적인 참여와 주인됨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. 모든 단계의 교육 체계에서 교사는 존중받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."

-유네스코 세계교육포럼 채택,

다카르(Dakar) 행동계획 69-70항

# 10. 권리 구제에 대한 보장

: 학생 인권이 의미 있으려면 권리 침해가 있을 때 이를 시정할 효과적인 구제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.

: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권리 회복이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.

"접근 가능한 그리고 친아동적인 신고 체계와 서비스의 수립 : (아동 폭력 신고와 관련) 각 국가는 안전하고 널리 홍보되어 있고 비밀이 보장되고 아동 및 아동의 대리인이 접근하기 쉬운 절차들을 세워야 한다. 모든 아동은 문제제기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."

- 아동폭력에 대한 유엔연구 A/61/299, 101-104항

## ➢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은 상생 관계

**교권이란?**

- 교사의 인권
- 교사의 교육권한(직권)
- 교사의 권위

### 1. 교사의 인권

: 교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가질 권리

: 핵심은 격무와 폭력으로부터의 자유

- 비차별, 자유권, 인간다운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 등 교사도 인권의 주체로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

# ☞ 학생인권이 바로 서야 교사 인권도 바로 선다

▲ 고등학생들에게 희롱당하는 여교사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캡쳐사진

- 여교사 성희롱 사건은 교권 문제이기에 앞서 젠더 문제
  - 여성인권으로 접근할 때 효과적
  - 그렇지 않으면 여교사는 피해자이자 무능교사로 전락

- 교사에 대한 도전이 학생들에게 재밋거리가 되는 이유 : 교사를 넘어서는 것은 학생 사이에서 강자가 되기 위한 관문이기 때문. 학교 안 인권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결과

- 0교시, 강제보충 등 감동하기 힘든 교육은 교사의 근로시간 연장 없이는 실현되기 힘듦. : 학생인권 수준을 높이면 교사인권 수준도 높아질 수 있음.

## 2. 교사의 교육권한(직무상의 권리)

: 교육과정 편성 운영권, 수업의 자유 등 포함

: "교사의 수업권은 교사의 지위에서 생겨나는 직권" (헌법재판소 결정례). 교사의 직권은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에 기초하여 규정되고 행사되어야 함

**☞ 학생인권은 교사 직권 보장에도 기여한다**

- 학생 강제동원 문제는 학생의 자유권뿐 아니라 교사의 수업권까지 침해하는 문제
- 학생의 교육권은 헌법상의 권리; 외부 압력에 맞서 교사의 수업의 자유가 옹호될 수 있는 근거이기도 됨.
-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명확한 법 기준이 정립돼 있을 때 교사는 학생을 지지하는 교육을 소신있게 펼 수 있다.

## 3. 교사의 권위

: 교사의 권위는 전문성과 진실한 소통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

: 권리는 주장되고 보장받아야 하는 것인 반면, 권위는 사랑과 존경처럼 주장된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.

**☞ 학생인권이 존중될 때 교사의 권위도 살아난다**

- 인권을 존중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교사는 인간적, 도덕적 신뢰를 얻게 됨
- 교사의 전문성의 핵심은 지적 자극과 격려를 통해 학생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는가 여부에 달려 있음; 자발적 성취의 기쁨은 교사에 대한 교육적 신뢰로 연결

교사가 모든 일을 끝마쳤을 때 아이들은 말한다.

"대단하다. 우리가 해냈어."

- 노자 도덕경 중 <배움의 도>

# 5.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원칙

**경기도교육청과**

**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가 드리는 약속**

## 1. 학생은 인권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출발

: 학생은 일방적 훈육과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인권의 주체인 사람

## 2. 헌법과 법률, 국제인권기준의 구현

: 헌법과 법률, 국제인권기준 등 상위법을 구체화한 조례안 성안

## 3. 학생-교사-보호자가 조화를 이루는 학교공동체 건설

: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, 보호자의 교육권이 조화롭게 실현되는 학교공동체 건설 지향

## 4. 보편성과 경기도 특수성에 걸맞은 조례 제정

: 미래지향적이고 보편적인 인권과제를 실현하되, 경기도의 특수 상황과 소수 학생들의 상황을 반영하여 중점과제를 개발

## 5.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거친 조례 제정

: 교육공동체의 모든 주체들이 공개적,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의사소통과정을 거쳐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설득력을 동시 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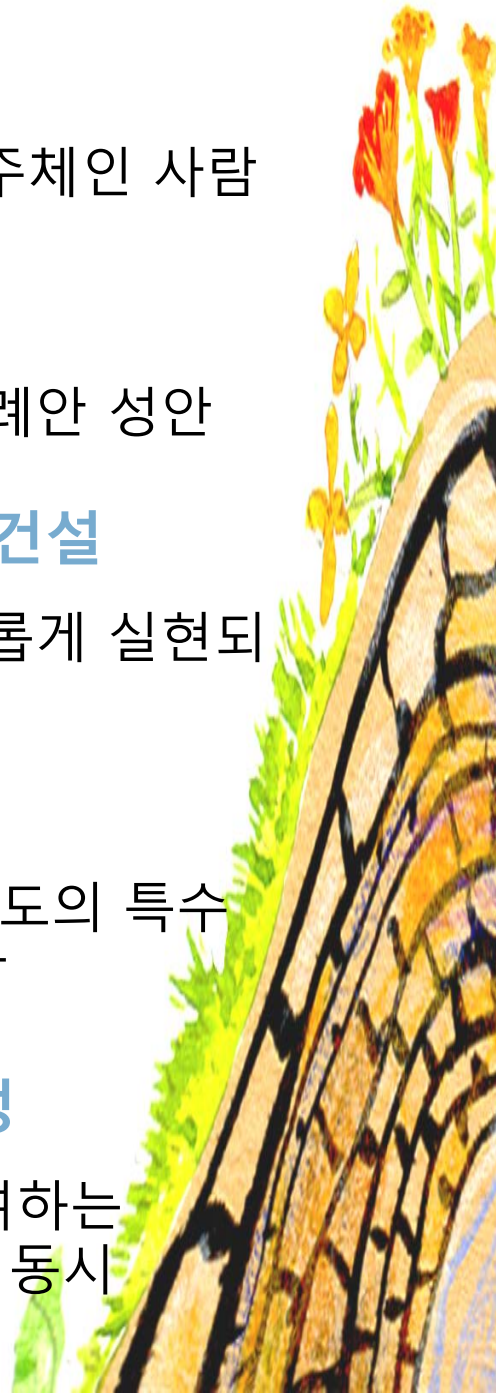

# 6.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운영원칙

##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가 드리는 약속

## 1.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 확보

: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, 국제사회, 인권시민사회,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경청하는 절차 마련.

: 소수 학생집단의 의견 개진과 참여 보장

## 2. 심도 깊은 학습과정

: 경기도 학생 인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, 학생인권에 관한 국내외 기준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에 걸맞은 조례안 마련

## 3. 정보 공개주의

: 자문위원회 활동과 논의자료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, 학습자료에 대한 접근권 보장